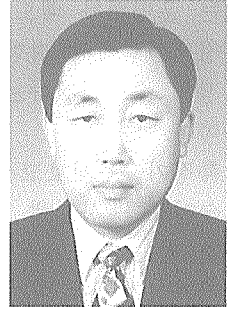


## 원자력법령 개정내용



우 상 철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과 서기관

### I. 머리말

원자력법시행령이 1995년 10월 19일 개정된 데 이어 시행규칙도 지난 4월 2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2년여 동안 추진하여 왔던 원자력법령의 개정작업이 끝나게 되었다.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이용개발증진 및 이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1958년 3월 11일 제정 공포되었다. 현행 원자력법의 근간은 1982년 4월에 개정된 것으로 그 동안 여러 대통령령에 의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원자력이용 및 안전규제 사항을 모아 단일의 원자력법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사회여건의 변화와 원자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수차례 보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는 그 동안 국내원자력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수준의 향상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 특히 안전규제부분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 졌다. 개정과정에서도 과거 어느 때의 개정보다도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제거하는 등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국민편의위주의 규제 행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분야에서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기관과 원자력계가 보다 합리적인 안전규제체계를 확립하고자 함께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 II. 주요 안전규제 변경사항

#### 원자로시설의 안전규제

##### 가. 인허가 심사제도

원자로의 인허가 심사와 관련해서 과거와 크게 변한 것은 심사계획통보에 관한 사항과 특정기술주체보고서 제출제도이다. 심사계획통보제도는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신청서 접수 후 심사 중점사항이나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시행령(영 제21조의2 및 제43조)에서는 사업자가

건설허가를 신청하면 과학기술처에서는 신청서 접수 60일 이내에 심사중점사항 및 심사계획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는 운영허가 때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서 밝힌 예측 가능한 안전규제행정을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인허가 신청 전에 기술자료를 사전에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제도로서 이때 제출한 자료는 건설허가신청시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건설허가 심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심사하는 측으로서는 기술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법 제104조의2에서 그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고 시행규칙에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과정 중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부지사전 및 제한공사승인제도가 원자력법에서 하나의 단계로 단순화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부지사전승인 및 제한공사에 관한 절차가 많이 변하였다. 제한공사가 사전공사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공사의 범위도 그 동안 무근콘크리트에 한하던 것이 철근을 넣은 공사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공사의 범위가 현실에 맞도록 확대된 것이다. 환경 영향평가는 시행령(323조의2)에서 원자력법의 적용대상이 방사선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방지로 한정됨에 따라 그의 내용도 원자력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에 관해서만 작성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조).

한편 연구용원자로의 인허가 관련사항이 대부분 원전의 경우를 준용하던 것을 인허가의 기초가 되는 첨부서류 등을 따로 정하였다. 그중 중요한 것이 연구용원자로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시 방사선 비상계획의 제출의무를 제외한 것이다. 시설의 내용이나 설치된

입지조건, 사고의 규모 면에서 원전의 경우와는 다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이외에도 원자력법에서는 국내 핵사찰 제도의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제26조의2, 제26조의3)에서는 이의 시행을 위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규정승인, 관련 검사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시행규칙(제10조의2)에서는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의 작성내용과 검사신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은 과학기술처에서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나. 사용전검사

그 동안에는 6-7년정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 기간 동안 안전관련 거의 모든 계통에 대하여 규제기관의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최종 성능시험만을 가지고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는 이러한 무제한적인 사용전검사의 실시는 건설주체인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주재관제도, 공인검사 등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중복검사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문제는 그 동안 국내원자력발전소의 계속된 건설로 경험이 축적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국내의 원자력기술이 향상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계통에 대하여는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한 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성능시험 단계에서도 상온 및 고온 기능시험이 가능한 때,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 시험이 가능한 때로 정하여 검사의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다만 최근 국내에 빈발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구조물의 안전성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사용전검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구조물공사의 특성상 강도시험 등 안전성은 공사 중에 확인하여야 효과적이므로 공사를 착공한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한 때로 하여 계속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용전검사는 규정보다는 검사관행이 더욱 문제되었던 그 동안의 사정을 감안하여 다음 사용전검사 신청시부터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다.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

원자력시설은 건설할 때보다 해체할 때가 더욱 위험하다. 방사능에 오염된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하게 됨에 따라 종사자의 피폭문제가 대두되고 잘못하면 인근주민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선오염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개정원자력법에서는 그 동안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을 신고만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안전심사 후 해체하도록 승인제도로 강화되었다.

시행령(제41조)에서는 이를 사업소마다 승인 받도록 하는 한편 동일부지에 종류, 열출력 및 구조가 같은 원자로시설을 함께 해체할 때에는 하나의 해체계획서로 심사 받도록 하였다. 시행규칙에서는 해체계획승인신청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전이 확인된 후에 승인하도록 하였다.

#### 라. 성능검증부품사용 의무화

성능검증이란 안전에 관련된 기기를 제작하였을 때 이들 기기에 대하여 어떤 환경조건에서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임을 각종 검사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다. 개정원자력법에서는 국내에 성능검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능검증업 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제94조의2)에서는 원자로 시설에 대한 주요부품은 성능검증된 부품을 사용하도록 기술기준으로 명문화하였다.

한편 성능검증업무는 산업계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과학기술처장관이 대상을 정할 때에는 통산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현재 성능검증업이 발달되지 않은 국내현실과 개방화시대의 국제적인 무역관행을 감안하여 국내검증업에 의한 검증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시행규칙(제42조의2-3)에서는 성능 검증업허가에 따른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신고범위를 규정하였다.

#### 방사선안전관리

##### 가. 용어정의 변경(시행령 제2조)

“피폭방사선량”은 과거에는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자연방사선은 제외한다고만 되어 있던 것을 자신의 진료를 위한 방사선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은 방사선을 제외한다고 다시 정의되었다. 적용제외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한 것이다. 진료의 경우 방사선에 의하여 치료받는 환자가 피폭받는 방사선은 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방사선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은 순수한 자연방사선만을 피폭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그 동안에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당연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에 법규화 하였다.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최대허용피폭선량”, “집적선량”, “최대허용집적선량”의 용어를 모두 “선량한도”로 바꾸었다. 이들 용어들에 내포하고 있는 방사선 피폭을 허용한다는 것이 표현상 문제가 있어 이를 피폭방사선량의 상한치로 개념을 바꾸어 “선량한도”로 규정한 것이다.

##### 나. 비파괴검사업 허가

국내 산업분야에서 방사선에 의한 비파괴검사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사선에 의한 비파괴검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의 개정에서는 비파괴검사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방사선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사업자의 편의 및 방사선이용의 촉진을 도모하였다.

법 제66조에서는 비파괴검사업체에 대한 허가기준을 기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허가기준에 보다 보완 강화된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이 마련되었다(규칙 제77조의5). 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방사선측정장비, 방사선방호장비, 관독장비 등과 소정의 면허 및 기술자격소지자를 갖추어야 허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시행령 제1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자가 비파괴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화를 막도록 하였다.

한편, 비파괴검사업체에서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사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와 허가사용자가 신고대상 범위의 동위원소 등을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시설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에는 일시적인 사용장소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왔던 것을 같은 시 또는 군과 그 인접한 시·군의 3개 이내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1명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의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고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시에 함께 하도록 간소화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초안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방사선취급감독면허소지자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종전대로 일반면허소지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독면허소지자 수급과 관련한

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동안 일시적 사용장소의 증가와 사업장의 빈번한 이동으로 신고에 따른 행정 수요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제때에 요건에 맞도록 신고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사항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시행규칙(제81조 제3항)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이동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신고 및 최종완료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소지자의 입회하에 절차서에 따라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작업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다. 방사성물질의 운반

방사성물질의 운반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번에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방사성물질의 운반용기를 제작하기 전에 제작승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였다. 제작승인받은 후에는 제작검사를 받아온 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반용기 제작업자는 정기적으로 시설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그 사실을 규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방사성 물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이동사용신고 대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사용신고제도는 그 본래의 안전성확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는 불편을 주고 규제기관에는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적절한 안전성확인 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운반신고가 같은 업체에서 반복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

안하여 반복신고시에는 중복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9조 제5항). 또한 이미 운반검사를 받은 것과 동일한 운반수단, 절차, 방법, 장비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운반검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37조 및 규칙 제100조의2). 다만 이 경우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심사는 운반검사 받은 후 1년간으로 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서면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라. 방사성물질의 폐기업허가

원자력법에서 방사성물질의 폐기업의 범위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으로 국한됨에 따라 그동안 허가대상이었던 방사성물질의 운반자체는 폐기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는 운송업자는 원자력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규제의 실효성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폐기업에 대한 검사 대상 및 시기를 정하고 폐기시의 기술기준도 강화되었다.

방사성물질의 폐기업허가신청시에는 폐기를 위한 부지특성보고서를 제출하여 부지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건설시에는 공정별로 설계 및 공사방법의 승인을 통하여 공정상의 안전성평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적으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함에 따라 해양투기와 관련된 조항이 모두 삭제되어 방사성물질의 해양투기에 의한 폐기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 마. 방사선피폭 관독업허가

그 동안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는 종사자가 작업기간 동안 TLD등 선량계를 착용한 다음 이를 관독업체에 보내어 관독한 후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관독업체에 대한 안전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독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불만이 있어 왔다. 개정원자력법에서는 자유업이던 방사선피폭선량관독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신설하여 관독업에 대한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 허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기준, 정기검사, 사업폐지시의 조치, 사업개시기간 등을 정하였다. 관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평균예금잔고가 5천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관독업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시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의 변경시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규칙 제106조의3).

관독업에 대한 검사는 다른 원자력시설과는 다르게 법 제90조의6에 의하여 품질보증검사만 매년 1회씩 받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97조의2 및 규칙 제106조의4). 정기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 등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 원자력관련 면허제도

시행령에서는 국내 기술수준의 향상과 민간자율능력의 제고 등 여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면허제도를 크게 개선하였다. 시행령(제296조)에서는 그 동안 원자력연수원에서 실시하여 온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자체교육기관에 의한 보수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자체교육에 의한 보수교육은 잘못 운영될 때는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보수교육의 실시여부, 교육과정 등의 승인을 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로 과기처 고시로 제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가 정지되도록 하여(시행령 282조)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의 의무화에 따라 당해근무와 관련한 면허정지제도가 폐지되고, 이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정지된 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다시 생기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여 제도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이 이외에도 원자로관련면허시험 중 실기시험의 모의제어반 실시, 신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건강진단서를 기존의 종사자건강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다. 이들 개선내용은 핵물질 관련면허에도 같이 적용된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 등 방사선이용 관련 면허에서는 상당수의 면허소지자가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면허소지자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원자력법(제95조 제1항)에 의해서 방사선 이용관련 면허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면허증을 교부하도록 되었다.

## 기타사항

### 가. 과징금 제도

과징금제도는 법규위반시 사업자로 하여금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인정하되 그에 의한 이득을 국고에 환수한다는 개념이다. 과징금 제도는 8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분야와 유통분야 등에서 도입된 이후 최근에는 여러 행정규제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번 원자력법에서도 과징금제도가 신설되었다.

원자력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규제를 가하는 대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제323조의3)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였다.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상한선을 2,500만원으로 하고 허가기준 미달, 명령위반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허가조건 위반은 500만원으로 정하였다. 핵주기사업자 및 생산업자는 1,000만원 이하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위반내용을 참작하여 부과기준금액의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수수료징수

원자력법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8에 의하여 각 인허가 신청시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다. 이번의 개정에서는 단순한 인상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운영하여온 수수료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보완하여 불합리한 것은 대폭 보완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나 운영허가시에는 그 동안 2백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수수료라기 보다는 인허가 심사 비용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대의 금액을 별도의 비용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중부담의 소지가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에서는 이들 수수료가 행정수수료 수준인 20만원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다른 인허가 수수료도 이정도 수준에서 조정되었다. 사용전검사는 안전기술원에 직접신청하며 정부에서 별도의 행정을 수행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징수대상에서 삭제하였다.

면허시험 수수료는 감독면허 및 특수면허는 2,000원-2,500원에서 20,000원으로, 일반면허는 1,5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인상을 보면 너무 커서 불합리한 것 같으나 현재 시험실시를 위하여 매년 수천만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시험경비는 응시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제때에 조금씩 인상하여 현실에 맞도록 법규를 운영하지 않고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하여 충격을 주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난받을 여지가 없지 않다.

이번 수수료 개정에서는 그 동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방사선안전규제 관련사항들이 새로 포함되었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 또는 판매사업허가, 폐기업허가, 판독업의 승인 및 허가 등의 신청시에 수수료가 5,000원-10,000원으로 신규 책정되었다.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면허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실시기간에 현금으로 납부하며 나머지는 모두 정부수입인지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 ALARA개념

원자력법 제97조제1항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고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방사선피폭량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원자력 안전정책성명에서 밝힌 ALARA개념(방사선안전관리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한다는 것)을 실정법에 도입한 것으로 지난 개정 때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개정 초안에서는 “종사자 및 주변주민이 받는 방사선량을 경제적 및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법이나 성명에서 도입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규제절차법인 시행령에서 이렇게 막연히 기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런 주관적인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법규에 의한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의 안전규제체계를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설에 따라 다르게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막연히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한다는 것도 실정법에서는 쓰기 어려운 표현이다.

논란 끝에 이 개정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따라서 좀더 확실한 ALARA에 대한 규제기준이 별도로 마련될 때까지는 법 제97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방호기준이란 기존의 “방사선량 등에 관한 규정(과기처고시 94-7호)”등 방사선관련 제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었다.

#### 라. 원자력관계종사자의 수당

시행령개정 초안에 원자력관계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종사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많은 기대와 공감을 얻은 바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운전원 등 원자력분야에 일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고 근무가 기피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보상은 필요시 되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다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개정초안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의 근거가 된 원자력법 제108조가 본래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무리였다. 또한 산업체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문제로서 공법인 원자력법에서 규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다. 이런 여러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법률적인 검토결과 이 사항은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못

했다. 비록 이번에 법규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안전성확보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치 이 문제는 우리 원자력계가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함께 노력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 III. 맺음말

이번의 원자력법령의 개정은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들 이외에도 첨부서류의 축소, 불필요한 규제 및 제한사항의 완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다.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과연 이렇게 단일의 원자력법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현재의 안전 규제체제는 우리에게 최적의 규제방안인가? 지방자치제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우리의 원자력법규는 문제점은 없는가? 환경문제 등 국민의 급증하는 규제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원자력법령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정이 직접적인 동기이나 변화하는 규제환경을 시급히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방사성 폐기물사업 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서 개정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모든 제도의 변경이 그렇듯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욕구를 법규에 고루 반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법규의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및 종사자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 법규를 직접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행정의 상당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잘 마련되어 있다.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자력가족 우리 모두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이다.

